

제27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감창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 감 창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감창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2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정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전통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상권형성을 함께 해 온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거리가게는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거리가게와 지역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거리가게 및 지역

상권의 상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 조례안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형성된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노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점차 이루어져 왔으며, 7,800여개의 노점 중 1,800여개의 노점이 양성화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합니다(붙임자료1 참조).

또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기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숙고하면서 수없이 직접 발로 뛰며 치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발의 추진경위 》

- '17.2.16 :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 주민청원 접수
⇒ '17.3.3 : 시의회 청원 채택
- '17.5.16 :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 석촌시장 상인대표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고 석촌시장 등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존치 건의
- '17.7. 7 : 1차 실무회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보도환경개선과)
- 조례(안)적용대상을 노점 전체에서 전통시장 내의 노점으로 축소
- '17.7.13 : 강동구 북조리시장, 고덕전통시장 방문
- 시장 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사례조사

- '17.8. 2 : 2차 실무회의(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노점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안을 자치구가 제안하는 사업으로 제한하여 수정·보완
- '17.8. 9 : 노량진 컵밥거리 방문
 - 동작구에서 특화거리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컵밥거리 상인 의견수렴
- '17.8. 9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17.8. 22 : 노점단체의 간담회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점 검토 및 보완사항 마련 (붙임자료2, 붙임자료3 참조)
- '17.8. 25 : 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정책 토론회
 -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청취
 -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를 합법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라며 상생가능성과 신뢰를 강조함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시민과 거리가게를 위한 정비와 상생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힘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과장은 “시장 내의 거리가게가 미치는 보행환경 및 안전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는 신중한 입장
 - 노점단체회장은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 거리가게가 합법적으로 시장의 발전에 동참하고 싶다” 고 밝힘
 - 시장상인회장은 “거리가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인, 노점, 공무원의 신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조언
 - 서울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일반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다. 이를 헤아려주기 바란다” 며 일반상인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함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조례가 통과돼 제도화 되면 다소 충돌은 있을지라도 거리가게가 제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며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자료들은 <붙임자료4>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민의견청취와 전문가 검토,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통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째, 상생위원회 구성원에 노점 측 인사를 다수 포함하여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며,

둘째, 실태조사의 목적이 정비차원이 아닌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셋째, ‘인근지역 거리가게’의 개념을 전통시장 동일상권에서 다년 간 운영되고 자치구가 관리해 온, 일렬로 나열되거나 상가와 마주보는 노점으로 한정할 것이며,

넷째,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내의 상인조직이 일반상가와 노점의 의견을 모아서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로 신청하게 하고, 이를 상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사항은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주시면 보다 실효성 높은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